

0 7 2 5 6

「**교통량 감축프로그램**」에 참여해 보세요.
 참여한 만큼 **교통유발부담금**을 감면해 드립니다.
 자세한 사항은 <http://s-tdms.seoul.go.kr/>

※ 미사용신고서 : 뒷면 작성

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/주거용 신고 안내

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(사)께 감사드립니다.

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이 『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』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월에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**미사용(공실)** 또는 **주거용 시설물**에 대하여 **미사용/주거용 신고**를 하시면, 해당 기간만큼 감면해 드리니 기한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】

- 부과대상기간 : 2018. 8. 1. ~ 2019. 7. 31.
- 부과대상시설 : 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시설물 중 본인 총 소유면적이 160㎡ 이상인 경우
- 부과대상자 : 2019. 7. 31.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
- 납 부 기 간 : 2019. 10. 16. ~ 2019. 10. 31.
- 부담금 산정 : 소유면적 × 단위부담금(1㎡당) × 교통유발계수

단위부담금(1㎡당) - 각 층 바닥면적의 합 기준	3,000㎡ 이하	3,000㎡ 초과 ~ 3만㎡ 이하	3만㎡ 초과
	700원	1,100원	1,600원

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(미사용/주거용) 안내 】

- 감면대상 : ① 부과기간 중 미임대(공실) 등으로 **30일 이상 연속하여** 미사용한 시설물
 ② 시설물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신청방법 :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(뒷면 작성)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제출
 ※ 주거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 용도란에 “**주거용**”으로 표기
- 증빙서류(뒷면참고)

미사용(공실) 증빙서류	주거용 증빙서류
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(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) 임대차계약서(미임대 확인할 수 있는 것) 수도 · 전기 · 가스(요금) 내역서, 휴폐업 증명서 등	전입세대열람내역 등

- 제출방법 : 우편 및 팩스(FAX: 2670-3640) 송부
 ※ **가급적 우편발송을 요청드리며, 팩스 전송시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**
- 제출기한 : 2019. 8. 31. 까지
 ☆ **미사용신고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!** ☆

